

學校法人 信一學園 理事會 會議錄  
(2023학년도 제6차)

회의소집통보일자	2023.11.30.		
이사정수	10	재적이사	9

1. 일 시 : 2023년 12월 8일(금요일) 오후 2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매로 49길 20 학교법인 신일학원 회의실
3. 출석이사(7명) :  
이사장 이상균,  
이사 김윤희, 이사 박병대, 이사 박영국  
이사 서유석, 이사 이세웅, 이사 이철구  
(가나다순)
4. 출석감사(2명) : 김학신, 최문규
5. 결석이사(2명) : 정두현, 이원희
6. 결석감사(0명) : 없음
7. 회의안건

- 1) 학교법인 신일학원 이사 선임의 건
- 2) 학교법인 신일학원 감사 선임의 건
- 3) 학교법인 신일학원 정관 변경(안) 승인의 건
- 4) 신일중학교 교장 원로교사 임용 승인의 건
- 5) 신일고등학교 야구부 감독 임용 승인의 건
- 6) 서울사이버대학교 학칙 개정 승인의 건
- 7) 기타안건

8. 회의진행

이상균 이사장은 법인사무직원으로부터 재적이사 9명 중 7명이 참석하여 성원됨을 보고 받고 개회를 선언하다. 이어서 박영국 이사의 기도가 있은 후 의장은 심의안건에 대해 설명하다. 안건에 대한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전자회의록 낭독이 있은 후 이의가 없음으로 수정 없이 한다.

이세웅	이상균	이철구	김윤희	박영국
박병대	김윤희	김윤희	김윤희	김윤희

이영춘 97/11/19 학교법인 신일학원 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의하고, 그동안 법인 이사로 계셨던 이영춘 이사께서 2023년 11월 1일 별세하셨음에 애도를 표하다. 이어 故이영춘 이사(개방, 교육경험 이사)의 임기(2022.07.18. ~ 2026.07.17.) 중 잔임 기간 동안 이사를 역임할 후보자로 법과 규정에 따라 2023년 12월 5일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로 추천된 서혜연, 정웅용 후보의 이력과 경력 등을 설명하다.

## 9. 안건심의

이사장 : 제1호의안 학교법인 신일학원 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의하고, 그동안 법인 이사로 계셨던 이영춘 이사께서 2023년 11월 1일 별세하셨음에 애도를 표하다. 이어 故이영춘 이사(개방, 교육경험 이사)의 임기(2022.07.18. ~ 2026.07.17.) 중 잔임 기간 동안 이사를 역임할 후보자로 법과 규정에 따라 2023년 12월 5일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로 추천된 서혜연, 정웅용 후보의 이력과 경력 등을 설명하다.

박병대 이사 : 삼가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하다. 故이영춘 이사의 후임 이사 후보자로 추천된 두 분 모두 훌륭하시고 좋은 분이지만 서혜연 후보가 대학의 교육 경험도 있으시고, 경력도 풍부하시어 법인과 학교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하고 이사로 선임하자고 제의하다.

김윤희 이사 : 박병대 이사의 제의에 동의하다.

박영국 이사 : 김윤희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이사장 : 김윤희 이사의 동의와 박영국 이사의 재청이 있은 후 다른 이사들의 의견을 물으니 전원 만장일치로 동의에 찬성하다. 이에 이사장은 서혜연 후보가 교육부승인일로부터 2026년 7월 17일까지 개방, 교육경험 이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하다.

이사장 : 제2호의안 학교법인 신일학원 감사 선임의 건을 논의하기에 앞서 김학신, 최문규 감사께 잠시 퇴장하여주시면 좋겠다고 말하다.  
이에 김학신, 최문규 감사가 퇴장하다.

이사장 : 김학신(공인회계사), 최문규(개방) 감사의 임기가 2024년 3월 14일부 만료됨을 설명하고, 법과 정관에 따라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음을 추가 설명하다.  
먼저 최문규 감사(개방)의 후임감사 선임을 논의할 것을 제의하고, 2023년 12월 5일 추천위원회에서 최문규 감사가 개방감사후보자로 추천되었음을 설명하다.

박영국 이사 : 최문규 감사는 그동안 법인의 감사로 재임하면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시여 법인과 학교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고, 다시 한 번 감사(개방)로 재선임하자고 제의하다.

박병대 이사 : 박영국 이사의 제의에 동의하다.

서유석 이사 : 박병대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 이사장 선임과 박병대

이사장 : 박병대 이사의 동의와 서유석 이사의 재청이 있은 후 다른 이사들의 의견을 물으니 전원 만장일치로 동의에 찬성하다. 이에 이사장은 최문규 감사(개방)가 2024년 3월 15일부터 2027년 3월 14일까지 3년간 중임되었음을 선포하다.

다음으로 김학신 감사(공인회계사)의 후임감사 선임을 논의할 것을 제의하다.

이철구 이사 : 김학신 감사 역시 그동안 법인의 감사로 재임하면서 공인회계사로의 능력을 발휘하여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셨으므로 다시 한 번 감사(공인회계사)로 재선임하자고 제의하다.

박영국 이사 : 이철구 이사의 제의에 동의하다.

김윤희 이사 : 박영국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이사장 : 박영국 이사의 동의와 김윤희 이사의 재청이 있은 후 다른 이사들의 의견을 물으니 전원 만장일치로 동의에 찬성하다. 이에 이사장은 김학신 감사(공인회계사)가 2024년 3월 15일부터 2027년 3월 14일까지 3년간 중임되었음을 선포하다.

김학신, 최문규 감사가 재임장 하다.

이사장 : 제3호의안 학교법인 신일학원 정관 변경(안) 승인의 건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의하고, 법인사무직원에게 상세설명을 요청하다.

법인사무직원 : 배포된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서울사이버대학교의 학교홍보 및 해외학생 모집에 필요한 해외사무소 설치를 위해 붙임 1. 학교법인 신일학원 정관 신·구조문대비표와 같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하다.

이철구 이사 : 학교 운영을 위한 정관 변경으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의하다.

서유석 이사 : 이철구 이사의 제의에 동의하다.

박영국 이사 : 서유석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이사장 : 서유석 이사의 동의와 박영국 이사의 재청이 있은 후 다른 이사들의 의견을 물으니 전원 만장일치로 동의에 찬성하다. 이에 이사장은 제3호의안 학교법인 신일학원 정관 변경(안) 승인의 건은 원안(붙임 1. 학교법인 신일학원 정관 신·구조문대비표)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하다.

이사장 : 제4호의안 신일중학교 교장 원로교사 임용 승인의 건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의하고, 법인사무직원에게 상세설명을 요청하다.

이유현

# 이유현 박병대

법인사무직원 : 회의자료를 통해 신일중학교 김정훈 교장의 임기가 2024년 2월 말로 (교육청 보고공문 상 2024년 2월 29일, 이사회 회의록 상 2024년 2월 28일) 만료되어, 법인 정관에 따라 임기 만료 시 원로교사로 임용하고자 한다고 설명하고, 본인 역시 이를 희망하고 있다고 추가 설명하다.

김 윤 희 이사 : 법인 정관에 따른 원로교사 임용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의하다.

박 병 대 이사 : 김윤희 이사의 제의에 동의하다.

박 영 국 이사 : 박병대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이 사 장 : 박병대 이사의 동의와 박영국 이사의 재청이 있은 후 다른 이사들의 의견을 물으니 전원 만장일치로 동의에 찬성하다. 이에 이사장은 제4호의안 신일중학교 교장 원로교사 임용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하다.

이 사 장 : 제5호의안 신일고등학교 야구부 감독 임용의 건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의하고 신일고등학교 교장에게 상세설명을 요청하다.

신일고등학교 교장 : 적법하고 규정에 맞는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최종 후보자로 올라온 하지호, 엄종수 후보의 이력과 경력 등을 설명하고, 최종 합격 인원은 2023년 12월 18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계약하며, 이후 근무실적 평가를 통해 1년 단위 재계약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한다고 설명하다.

서 유 석 이사 : 최종 후보로 올라온 두 분 모두 훌륭하시고 좋은 분이지만 하지호 후보가 나이도 젊고 경력도 우수하여 보다 열정적으로 야구부를 이끌어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하고 야구부 감독으로 선임하자고 제의하다.

이 철 구 이사 : 서유석 이사의 제의에 동의하다.

박 병 대 이사 : 이철구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이 사 장 : 이철구 이사의 동의와 박병대 이사의 재청이 있은 후 다른 이사들의 의견을 물으니 전원 만장일치로 동의에 찬성하다. 이에 이사장은 하지호 후보가 2023년 12월 18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근무실적 평가 후 1년 단위 재계약) 신일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으로 임용되었음을 선포하다.

이 사 장 : 제6호의안 서울사이버대학교 학칙 개정 승인의 건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의하고, 서울사이버대학교 총장에게 상세설명을 요청하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총장 : 제3호의안 학교법인 신일학원 정관 변경의 후속 조치 사항으로 해외사무소 설치·운영을 위해 붙임 2. 서울사이버대학교 학칙 신·구조문대비표와 같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하다.

김 윤 희 이사 : 학교 운영을 위한 학칙 변경으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의하다.

박 영 국 이사 : 김윤희 이사의 제의에 동의하다.

이상균

이철구

박병대

이 철 구 이 사 : 박영국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이 사 장 : 박영국 이사의 동의와 이철구 이사의 재청이 있은 후 다른 이사들의 의견을 물으니 전원 만장일치로 동의에 찬성하다. 이에 이사장은 제6호 의안 서울사이버대학교 학칙 개정 승인의 건이 원안(붙임 2. 서울사이버대학교 학칙 신·구조문대비표)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하다.

#### 10. 폐 회

이 사 장 : 이번 이사회 회의록에 간서명을 할 이사로 본인(이상균 이사장)과 박 병대, 서유석 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고, 다른 이사들의 의견 여부를 확인하니 이의가 없으므로 간서명 이사는 본인(이상균 이사장) 포함 박병대, 서유석 이사(총 3명)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하다.

의장이 다른 기타 부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김윤희 이사의 폐회 동의와 이철구 이사의 재청이 있은 후 폐회를 선언하다. 이어서 박영국 이사가 폐회 기도를 마치니 동일 오후 2시 30분이 되다.

2023년 12월 8일

이 사 장 이 상 균 이 상균

이 사 김 윤 희 김윤희

이 사 박 병 대 박병대

이 사 박 영 국 박영국

이 사 서 유 석 서유석

이 사 이 세 용 이세용

이 사 이 철 구 이철구

감사 김 학 신 김학신

감사 최 문 규 최문규  
(가나다 순)

이상근

이상근 대구한국대학교  
법학대학

## 불임 1. 학교법인 신일학원 정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65조의4(부속시설 등) ① 대학교에 필요한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② <생략>	65조의4(부속시설 및 해외사무소 등) ① 대학교에 필요한 부속시설 및 해외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사립 학교 법 제5조(자산) 제①항
	<p style="text-align: center;"><u>부 칙</u></p> <p style="text-align: center;">이 정관은 2023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p>	

이상근 대구한국대학교  
법학대학  
이상근 대구한국대학교  
법학대학  
이상근 대구한국대학교  
법학대학

# 이상근 서울사이버대학교 학칙 신·구조문대비표

## 불임 2. 서울사이버대학교 학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요점
<신설>	<p><u>제5조의2(해외사무소 등) ① 본 대학교는 해외의 학생모집, 홍보 등을 하기 위하여 해외사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u></p> <p><u>② 해외사무소의 위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u></p>	· 해외사무소 설치 근거 마련
	<p><u>부 칙</u></p> <p><u>이 학칙은 2023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u></p>	

이세웅 박영호 김윤희 박병대 김민수  
 이상근 서울사이버대학교 학칙 신·구조문대비표 2023.12.08